입안계획서

1. 행정규칙명

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(관세청 고시 제2021-72호, 2021. 12. 28.)

2. 개정사유

○ 관세심사위원회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통합·개정됨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·고시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, 청구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 개정내용

- □ 관세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일선세관 지정(§25.⑥·⑦)
- 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**관세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일선세관**을 지정
- □ 처분청의 직권시정 대상 명확화(§14①·④)
- 동일한 내용・쟁점・적용법령으로 불복 계류 중 어느 하나의 청구건이 인용 결정된 경우 및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품목 번호로 결정한 사안인 경우 **처분청의 직권시정 대상임을 명확**히 하여 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
- □ 「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」에 따른 사전진단 절차 마련(§205), §254), §264)
- 관세심사위원회 위원이 관세불복 청구인 및 대리인과 **사적이해관계자**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도록 **사전진단** 절차 마련

- □ 기타 개정 사항
- 관세불복 청구인으로부터 위임받은 **대리인**에 한해 **회의장 출입** 및 **의견진술** 가능하도록 불복대리업무 담당지정서 신설(§17④)
- 이의신청 결정 후 심사청구시 관세법 제119조에 따른 심사청구와 감사 원법 제43조에 따른 심사청구 제기기간이 상이하므로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명확히 안내(§24조의2)
- 4. 전문 및 신구 조문 대비표: "붙임" 참조
- 5. 규제대상여부: "해당없음"
- 6. 시행일자 : 2023. 7. 1.

7. 의견제출 방법

이 제 출 처 :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

○ 담 당 자 : 박노명 사무관(042-481-7804), 정기용 주무관(042-481-7778)

ㅇ 제출기한 : 2023. 5. .

○ 제출방법 : 내부메일 및 외부메일(tigmiru74@korea.kr)